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대하여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(이하 금융기관)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,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□ 금융기관의 목록 추가(안 제2조제2호 개정)

-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목록에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법령 아님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

바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조합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대출”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마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「 <u>신용협동조합법</u> 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바. 「 <u>농업협동조합법</u> 」에 의한 조합 사. (현행 마목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374